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인공임신중절 정의 개정(안 제2조제7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「형법」 제269조는 '약물 기타방법에 의한 낙태'를 전면 금지
- 「모자보건법」은 '인공임신중절수술'만을 규정하고 있어,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

- 외과적 수술 대비 비침습적인 자연유산유도약물(미프진 등)에 의한 중절 허용 요구가 지속 제기*됨에 따라 개정 필요

* 자연유산유도약물 도입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('17.9월 23.5만명 참여)

** WHO는 임신 9주 이내 약물 투여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절방법으로 권고,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총 67개국에서 의약품 등록('17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현행 '인공임신중절수술'을 '인공임신중절'로 하고 약물,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로 정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공임신중절의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선택권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2. 중앙 임신·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·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

(안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 및 제21조제10호 내지 제12호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1항제1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재 결정 취지에 따라 여성이 전문가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임신·출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고, 이를 토대로 숙고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 환경조성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**(추진체계)** 중앙 임신·출산 지원기관의 온라인·전화 긴급상담과 보건소 등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의 대면 종합상담 창구 운영
- **(중앙 임신·출산 지원기관)** 중앙 임신·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은 임신인지, 아동유기 등 임신·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
 - **(업무위탁 및 경비보조)**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및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
- **(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)** 접근성·공공성·정책연계성 확보, 여성의 낙인감 없는 상담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전달체계인 시·군·구 보건소에 '임신·출산 종합상담창구' 설치
 - **(민간자원 활용)** 보건소 이외,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을 하여 '임신·출산 종합상담창구'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
 - **(행정처분)** 비영리법인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
 - **(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및 경비보조)** 종합상담창구에서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'상담 사실 확인서'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운영경비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
 - **(벌칙)** 지정을 받지 않고 '상담 사실 확인서'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벌칙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위기갈등상황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3.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(안 제12조제3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피임교육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 전 국민 대상 생식건강 증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피임교육 등이 특정 성별,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모자보건법 입법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식건강 개념을 사용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
 - 피임교육 및 홍보,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,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 대상 피임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4.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(안 제14조 및 제2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(19.4)에 따른 후속조치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은 기본권 침해를 처벌하는 기본질서법이고, 모자보건법은 여성 생명·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법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법체계 마련 필요
- 인공임신중절의 합법적인 허용범위(주수, 사유, 절차요건)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의 관련 규정 삭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의사가 여성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 할 수 있는 사항, 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”^{*} 규정 삭제(안 제14조)
-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(「형법」 제269조제1항·제2항 및 제270조제1항) 배제 규정 삭제(안 제28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리에 따른 법체계 정비로 합리적 법 적용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5.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 의무 등 (안 제14조의2, 및 제27조제1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이 임신의 유지·중지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에 의해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의 “설명 의무”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(설명 및 서면동의) 시술방법, 후유증, 시술전·후 준수사항, 피임방법,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,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
- (제3자 동의) 배우자 동의규정을 삭제하고,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우회절차 마련
- (행정제재)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의사에 의한 중립적·충분한 의학적 설명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여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6.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·수락(안 제14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, 현재의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의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거부, 수락 의사 고지)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받는 즉시 수락 또는 거부 의사(意思)를 알리도록 하고,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
- (상담기관 안내의무) 고의적인 시술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시술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 유지·중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상담기관 안내의무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면서, 여성의 건강 및 상담기관 정보 접근성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